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1.05.13.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
행정재경위원회

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.4.26.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, 2021.4.30.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(의안번호 : 2590호).

2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.(안 제명)

나.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,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2조 및 제3조)

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의 제척·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.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
라.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회의의 개최 및 의결사항과 간사 지정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1항과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.

○ 또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와 해촉, 그리고 간사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.

나. 검토 내용

○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본칙 10조항, 부칙 1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였습니다.

○ 안 제3조(구성)제1항을 개정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로 개정하였습니다.

- 제2항과제3항은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조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.

○ 안 제5조에 위원의 제척·회피 조문을, 제6조에 위원의 해촉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안 제8조(협의회의 운영)를 신설하여 회의 운영과 개의, 찬

성 요건을 규정하였으며, 간사 규정과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부칙은 1개 조문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와 해촉, 그리고 간사에 관한 규정 및 회의 운영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○ 상위법 개정을 따르고 있고, 그 외 법령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**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** 〈개정 2020. 12. 8.〉

② **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 〈개정 2020. 12. 8.〉

〔시행일 : 2021. 6. 9.〕